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조규영 의원(구로2)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조규영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은 집단건물,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적환장을 가설 건축물에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